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박기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박기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회 선배, 동료의원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의 경우 실제 현장에서는 필요한 정비요원 규모가 서로 상이하나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은 자격증 소지 정비사를 최소 3인 이상 확보토록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하고 자격증 소지 정비사 부족으로 업계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인 바,

소형자동차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의 자격증 소지 정비사 확보 기준을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정비요원 총수 규모에 따른 자격증 소지 정비사 확보기준을 현행 ‘16명 이상인 경우 총수의 5분의 1이상’에서 ‘11명 이상인 경우 총수의 5분의 1이상’으로 다소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